

[별표1]<개정 2000.7.27., 2000.12.29>

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석유제품(제14조관련)

구 분	석유판매업의 종류	취급석유제품
등록대상	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주유소 용제판매소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(자가생산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) 부생연료유판매소	석유제품(용제 및 부생연료유를 제외한다) 용제 휘발유·등유·석유 용제 부산물인 석유제품 부생연료유
신고대상	일반판매소 항공유 판매업 특수판매소	등유·경유 항공유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석유제품

* 비고 : 윤활유 또는 아스팔트만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또는 신고대상 석유판매업에서 제외된다.